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의 시행에 따른 부천시 지방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6월 30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7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5. 7. 12) 상정

○ 제12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5. 7. 12)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예산과장 조 재 형)

가. 제안이유

○ 2005년도 총액인건비제 전국 시범기관으로 국·과 단위 조직을 분리·신설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행정기구 및 관직 등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위원회 위원의 직위명을 소관업무를 포함하도록 변경하고, 사업소중 과 단위로 통합 변경되는 부서명을 일제 정리함.

- 금회 정비 건수 : 6건

※ 자치법규 등 현황 : 422건(조례 237건, 규칙 119건, 훈령 56건, 예규 10건)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으로 선정 조직개편에 대비하여 추진 되는 조례의 제정인가?	○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으로 선정 되어 사전에 대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시행에 따른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95호
의결 년월일	2005. 7. 15 (제120회)

제출년월일 : 2005. 6. 3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2005년도 총액인건비제 전국시범기관으로 국·과단위 조직을 분리·신설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행정기구 및 관직 등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위원회 위원의 직위명을 소관업무를 포함하도록 변경하고, 사업소중 과 단위로 통합변경되는 부서명을 일제 정리함.

- 금회 정비 건수 : 6건

※ 자치법규 등 현황 : 422건(조례 237건, 규칙 119건, 훈령 56건, 예규 10건)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시행에 따른 부천시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의 개정)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를 “부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3조중 “시설(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화장장관리사무소, 묘지,납골당 관리사무소)”를 “시설”로 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제2조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한다.

제2조(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개정) 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로 한다.

제4조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중 “행정지원국장”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업무담당국장”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동항제1호중 “행정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업무담당국장, 문화업무담당국장, 복지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제17조중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하며, 제21조중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및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3조(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중 “다음 각호의 1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4조제3항중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총무업무담당국장, 예산업무담당국장, 도시계획업무담당국장, 건설교통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제14조중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4조(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의 개정)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

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를 “부천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시의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 가정복지업무담당과장,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 도로업무담당과장, 교통시설업무담당과장, 건축업무담당과장

제13조중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5조(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의 개정) 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부천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제5조 및 제16조중 “다음 각호의 1”을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건설촉진법」”으로, “공동주택관리령”을 “「공동주택관리령」” 으로 한다.

제6조(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

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를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치와 명칭)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은 부천시 정수과 내에 두며,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제28호 부천시”라 칭한다.

제3조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정수과장”을 “정수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중 “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수질검사”로, “소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사업소 소속 직원”을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10조제5항중 “소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외의 부분중 “소장“을 각각 “시장”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5조중 “소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중 “부천시상하수도사업소장”을 각각 “부천시장”으로 한다.

제1조중 “먹는물관리법”을 “「먹는물관리법」”으로 하고, 제5조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먹는물관리법”을 “「먹는물관리법」”으로, “지하수법”을 “「지하수법」”으로, “공중위생법 제12조”를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8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부천시여비조례”를 “「부천시 여비 조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는 개별 조례를 정리함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 지급조례	부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화장장관리사무소, 묘지,납골당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장려수당) ---------- ---------- ---------- ---------- ---------- -------시설---------- ---------- ---------- ---------- ----------.
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2. (생 략)	제4조(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1.·2.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 략)	제10조(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2. (생 략) ④ (생 략)	③----------사회단체보조금지원업무담당국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1. 당연직 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업무담당국장, 문화업무담당국장, 복지업무담당국장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용역과제 심의대상)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3. (생 략)	제3조(용역과제 심의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 1.~3.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② (생 략)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④ (생 략)	제4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총무업무담당국장, 예산업무담당국장, 도시계획업무담당국장, 건설교통업무담당국장----. ④ (현행과 같음)
부천시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	부천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 설치) ①~③ (생 략)	제8조(위원회 설치) ①~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④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시의 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도시과장, 도로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축과장 2. (생 략) ⑤ (생 략)	④ ----------. 1. 당연직 위원은 시의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 가정복지업무담당과장,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 도로업무담당과장, 교통시설업무담당과장, 건축업무담당과장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부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	부천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4조(구성) ① (생 략)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③~⑤ (생 략)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국장--. ③~⑤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4. (생 략)	제5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4. (현행과 같음)
제16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사유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 (생 략)	제16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위치와 명칭)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은 부천시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정수과내에 두며,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제28호 부천시상하수도사업소"라 칭한다.	제2조(위치와 명칭)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은 부천시 정수과 내에 두며,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제28호 부천시”라 칭한다.
제3조(구성)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수질검사기관의장으로, 정수과장을 운영책임자로 하고 검사인원은 환경부 고시기준에 정한 적정인원 이상으로 구성 운영하며, 그 직급 및 인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구성)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정수업무담당과장----------.
제7조(수질검사 의뢰) 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검사신청서와 "별표 1"에 정한 검사용 시료소요량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에 의할 수 있다.	제7조(수질검사 의뢰) 수질검사----------시장----------.

현 행	개 정 안
제9조(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 ① 수질검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은 관련법령에 의거 사업소 소속 직원이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거나 시험기구를 지참하여 출장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생 략)	제9조(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 ①---------- ---------- 소속 직원---------- ----------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검사성적서의 교부) ①~④ (생 략) ⑤제1항에 의하여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성적서의 교부)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 ----------시장-------- -------.
제12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5. (생 략)	제12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시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1.~5. (현행과 같음)
제15조(성적원본의 말소) ①소장은 검사 의뢰인이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제15조(성적원본의 말소) ①시장---------- ---------- ---------- ---------- ------.

현 행	개 정 안
②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당한자의 성명과 말소사유, 검사한 시료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장----------.